

국내 오픈뱅킹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정 희 수 연구위원(heesoo_jung@hanafn.com)

금융위는 공동 결제망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은행의 고객 접점에 대한 독점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정보 공개, 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성 및 기존 은행에 대한 규제 역차별 해소 등과 같은 일관된 규율체계의 정비, 시장참여자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이 요구된다.

■ 오픈뱅킹 제도 개편을 통해 API 기반의 공동 결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¹⁾

- 오는 10월 30일부터 국내에서도 기 운영 중인 공동 오픈 API('16.8)를 개편한 API 기반의 공동 결제시스템을 시행할 예정
- 오픈뱅킹이란 비금융 제3사업자(Third Party Provider: TPP)가 은행에서 보유한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은행의 API 연계 의무화)를 의미함
 - '18년 1월부터 시행된 EU의 PSD2에서는 오픈뱅킹을 AIS(Account Information Service)와 PIS(Payment Initiation Service)로 구분
- 이번에 시행되는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별도의 제휴 없이 핀테크 기업에 API 방식으로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이는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

■ 국내 오픈뱅킹의 주요 내용은 공동 결제망의 개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산업)과 지급지시서비스업(MyPayment산업)의 도입 등을 포함

- 금융위는 공동 결제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동시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지급지시서비스업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공동 결제망 개편)** 공동 결제망의 이용 대상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18개 은행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현행보다 1/10 수준으로 낮게 부과
 - 기존 공동 결제망은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제한되고 이용 수수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1] 금융위는 10월 30일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임

- 금융위는 API를 통한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 제공을 의무화하고 은행결제망 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중
 - 동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망을 이용하는 구조이며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MyData산업)** 핀테크 기업이 금융소비자 동의 하에 본인신용정보의 통합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²⁾
 - MyData 사업자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수익 확보를 위해 본업무 외에 정보계좌업무, 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등의 부수·겸영업무를 허용
- **(MyPayment산업)** 핀테크 기업이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계좌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 더 나아가 은행과의 제휴 없이 독자적인 계좌를 가지고 이체업무를 할 수 있는 '중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중기적으로 추진할 예정

■ 이와 함께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 도입을 추진

- 금융위는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
-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추고 적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참여를 유도

■ 국내 오픈뱅킹 관련 새로운 제도

	은행권 공동 결제망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산업)	새로운 전자금융업	
			지급지시서비스업 (MyPayment 산업)	중합지급결제업
법적 근거	금융결제원 규약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대상 확대 -(이용기관) 소형 핀테크→모든 핀테크+은행 -(제공기관) 18개 은행 • 결제수수료 인하 - 건당 400~500원 → 1/10 수준 <p><개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결제망 제공 의무화 • 이체처리 순서, 처리시간, 수수료 등의 차별 행위 금지 • 핀테크 기업의 한은 금융결제망 직접 참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규제 -허가제, 최소자본금 5억원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정 -금융사 50% 출자 의무 미적용 • 개인신용정보이동권 적극 보장 (민감 정보, 2차 가공정보 제외) • 고유업무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적용대상: 예금 입출금, 카드 내역, 대출, 보험 계약, 투자자예탁금, CMA, 투자상품 등 • 부수업무 -정보계좌업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대리 행사(정보관리) 업무, 데이터 분석/컨설팅 및 제3자 제공 업무, • 겸영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제휴없이 독자적으로 계좌 발급/관리하고 자금이체 서비스 제공 • 주요 업무 -현금 보관/인출 -결제/송금 -상품 증개/판매 -금융결제망 참여

자료 :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재정리

[2]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김병욱 의원(의 12명)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현재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위한 최소자본금은 50억원, 전자자금이체 업무,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위한 최소자본금은 20억원으로 규정되어 부담이 큰 편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영국, 호주, 홍콩,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

-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9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당좌계좌(current account)와 신용카드('18.9)를 대상으로 AIS와 PIS, 상품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
 - '19년 7월말 현재 151개 업체(계좌제공자 56개, 제3사업자 95개)에서 참여하고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사업자가 38개에 이름
- 호주는 4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AIS와 상품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직불카드에서 신탁, 퇴직연금, 모기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
 - 4대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 간 1년 시차를 두고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직불카드, 예/적금, 결제계좌('19.7/'20.7), 모기지('20.2/'21.2), 개인대출('20.7/'21.7) 順
- 홍콩은 '19년 10월까지 상품(1단계) 및 고객 정보(2단계)를 공개하고 '20년부터 AIS(3단계)와 PIS(4단계)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정 API 표준의 사용을 권장
 - 은행에서 API 시스템을 구축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
- 일본은 은행법 개정('18.6 시행)을 통해 오픈 API 구축 노력을 의무화(시행 2년 내)하고 '20년에 은행과 전자결제대행업자 간 계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규정³⁾
 - '19년 3월말 기준으로 오픈 API 도입을 표명한 은행은 130개(외은 제외 약 94%)이고 이 중 95개 은행이 도입하기로 결정, 정보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더디게 진행
- 국가별로 오픈뱅킹 도입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금융상품 정보 제공과 함께 AIS, PIS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주요국 오픈뱅킹 제도의 운영 방향

	영국	호주	홍콩	일본
도입 시기	-9대 은행: '18.3	-4대 은행: '19.7 -전 은행: '20.7	-상품정보: '19.1 -고객정보: '19.10 -계좌/거래정보: '20~	-은행 오픈API 체제정비 (~'20.6)
주요 기능	AIS / PIS 금융상품 정보	AIS 금융상품 정보	금융상품 정보 AIS(3단계)→PIS(4단계)	-
정보공개범위	결제계좌 신용카드	신용/직불카드, 예/적금, 신탁, 퇴직연금, 외화예금, 모기지, 개인대출, 리스	예/적금, 대출 펀드, 주식계좌 보험	-
특성	-API 표준 자율적 결정 -OBIE 설치(관리업무)	-제도 안정화된 후 PIS 기능 적용 검토	-4단계 접근 :상품/고객/계좌/거래 -특정 API 표준 권장	-은행법 개정 시행('18.6)

자료 : CMA, ACCC, HKMA, 日 금융청

[3] '20년 5월에 은행과 계약된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日 금융청은 '정보활용업무를 은행법 상 부수업무로 추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입장

■ 오픈뱅킹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제판(제조와 판매) 분리의 가속화

- 오픈뱅킹은 기존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시켜 은행의 고객 독점력이 상실되면서 제판 분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
- 오픈뱅킹 시행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초기 고객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2차적으로 은행-핀테크 기업 간 경쟁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
- 또한 고객 접점이 개별 은행 App.에서 제3사업자 App.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상품의 제판 분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오픈뱅킹에서의 성공요인은 다수의 고객 보유, 높은 사용 빈도, 이용 편의성과 간편성 등에 있으며 향후 시간 점유(time share)가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로 부각

■ 향후 오픈뱅킹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장 형성이 중요하지만 이후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다양한 정보가 필요에 의해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
 -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공유하기보다 시차를 두고 장기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
- 규제 샌드박스 하에서의 혁신금융서비스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기존 은행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없애는 등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
 - 특히 은행이 정보 제공자이면서 시장참여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재(고객 동의 전제)성격을 가진 오픈뱅킹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함
- 많은 제3사업자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대형사업자만이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필요
 - 제3사업자의 경우 뚜렷한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에 앞서 사업모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pre-stage)를 두는 방안을 강구
- 장기적으로 오픈뱅킹의 결제와 관련하여 제3사업자의 금융결제망에 대한 직접 참여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은행을 통한 간접 접근방식도 있지만 영국과 같이 금융결제망의 청산계좌를 가진 사업자(aggregator)를 통해 제3사업자가 직접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 